

머리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013년판 ‘심의결정집’(통산 제52호)을 내놓습니다.

올해 심의결정집에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에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 및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비회원사들이 발행한 일간신문의 기사와 광고들 중에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기사 부문에서 762건(결정 이유 1387건)의 심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결정 이유별로 보면 ‘보도자료의 검증’(318건),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245건),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178건),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165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84건), ‘답변의 기회’(63건), ‘표제의 원칙’(59건), ‘선정보도의 금지’(43건), ‘언론의 책임’(35건), ‘보도와 평론’(23건),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18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18건), ‘미확인보도 명시원칙’(18건), ‘사회적 책임’(17건),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15건), ‘자살보도의 신중’(12건), ‘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12건), ‘관계사진 게재’(12건),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11건), ‘언론의 독립’(10건) 등입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제 관련 15개 조별로 보면 보도 윤리를 위한 최소 수칙인 ‘보도준칙’(제3조) 부문 제재가 5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작권 관련 조인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제8조) 부문 제재가 모두 358건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문의 위반이 몇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문윤리위원회는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부문에서의 제재 사례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부문의 제재 건수는 2009년 관련 심의를 대폭 강화했을 때 5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해에는 155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11년 225건, 2012년 264건에 이어 올해 358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의 저작권 위반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문제삼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온 신문들이 스스로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신문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신문의 위상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사례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절대 다수가 홍보성 기사이거나 기사+광고 식으로 광고 수주를 겨냥해 지면을 제작한 사례들로 그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기간의 불황과 이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신문제작의 정도를 벗어난 제작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광고 관련 결정 건수는 1389건으로 2012년 910건에 비해 52%나 증가했습니다. 결정 이유로 본 수치도 3313건으로 2012년 2014건에 비해 64% 늘어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폭증한 것입니다.

제재 이유별로는 법규위반광고가 1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허위광고 1253건, 과대광고 558건, 책임소재불명 광고 14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허위광고는 178%, 과대광고는 129%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신문의 공신력과 영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신문윤리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윤리위원들과 심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지 형